

보도시점 2026. 9. 16.(수) 12:00 / 배포 2026. 9. 16.(수) 08:30

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 납품단가 737억 원 인상 등 이행실적 및 하도급법 집행동향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16일(수)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형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약 25명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하도급조사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임원 등
 - ※ 7.24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11월 중 예정

< 주요 협약 이행 실적 >

(납품단가 인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약속하였다. 협약 당시 340억 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077억 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쟁기구 설치·운영)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하여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하였다.

(모범사례 공유 등)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포스코이앤씨)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제일건설)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5002)
		담당자	사무관	신덕진 (044-200-5008)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 선언문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며,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하나. 공사용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하나.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하나.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한다.

하나. 부당특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한다.

2026년 5월 28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참석자 전원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전문건설업계는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에 힘쓰고,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한다.
8.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 (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오세철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한우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DL이앤씨(주)
대표이사 박상신

GS건설(주)
대표이사 김태진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우정

(주)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치영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오일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대표이사 김영식

IPARK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정경구

(주)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우석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박철휘

디엘건설(주)
대표이사 여성찬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대표이사 정연인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오태식

(주)서희건설
대표이사 김원철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허만공

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김영범

(주)KCC건설
대표이사 심광주

참고2**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연번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1	삼성물산	1
2	현대건설	2
3	대우건설	3
4	디엘이앤씨	4
5	지에스건설	5
6	현대엔지니어링	6
7	포스코이앤씨	7
8	롯데건설	8
9	에스케이에코플랜트	9
10	IPARK현대산업개발	10
11	한화	11
12	호반건설	12
13	디엘건설	13
14	두산에너빌리티	14
15	계룡건설산업	15
16	서희건설	16
17	제일건설	17
18	코오롱글로벌	18
19	케이씨씨건설	20

※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25년 기준, 19위(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등 사유로 불참,
(주) 등 법인격 기재 생략